



		대법원 2025. 1. 8. 선고 2025후10235 권리범위확인(디) (사) 상고기각
제목	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	
판시사항	<p>1.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/ 등록된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 · 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일 경우, 이를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(한정 적극) / 디자인 구성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중요도를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낮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(한정 소극),</p> <p>2.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디자인인 경우,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(소극)</p>	
판결이유	<p>1.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,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,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(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10후1619 판결,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4후1501 판결 등 참조). 이 경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10후265 판결 참조).</p> <p>등록된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·모양이 공지·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, 이를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(대법원 2006. 7. 28. 선고 2005후2922 판결 참조).</p> <p>한편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, 그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것이 아니므로, 그 부분이 공지의 형상에 해당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다(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5후2274 판결, 대법원 2011. 2. 24. 선고 2010후3240 판결 등 참조).</p> <p>2.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,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(이하 '통상의 디자이너'라고 한다)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, 확인대상 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(대법원 2016. 8. 29. 선고 2016후878 판결 참조).</p>	

## (1) 본 판례의 의의 및 취지

- 디자인권 권리범위 확인에서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의 전형적 판단 구조를 종합적으로 제시한 판례.
  - 공지·공용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이라 하더라도,
  - 그 결합에 의해 새로운 심미감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유사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
  - 물품의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도, 대체 가능한 선택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
  - 단순히 기능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사 판단에서 중요도를 낮출 수 없음을 확인.
  -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디자인과의 대비 자체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
  -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등록디자인의 창작용이성(무효사유)을 다툴 수 없고,
- 그러한 주장은 상고심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함

## (2) 사안개요

- 당사자
  - 원고(상고인): 주식회사 OOO
  - 피고(피상고인): △△△ 주식회사
- 절차 경과
  - 원고는 자신의 확인대상 디자인이 피고의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



###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함

-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
- 원고는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도 이를 기각
-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함
- 쟁점
  -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**유사한지 여부**
  - 확인대상 디자인이 **자유실시디자인**에 해당하는지 여부
  -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**등록디자인의 창작용이성 주장 허용 여부**

## (3) 법리

### ①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 법리

-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
  -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
  - **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·관찰하여**
  - 보는 사람에게 **상이한 심미감을 주는지 여부**에 따라 판단함
-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,  
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**유사하다고 보아야 함**
- 물품의 사용 시 **외관뿐 아니라 거래 시 외관에**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함

### ② 공지·공용 형상의 결합

- 등록디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·모양이 공지·공용에 속하더라도
- 이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 
→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

### ③ 기능적 형상의 평가

- 디자인 구성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**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**이 존재하는 경우
- 해당 형상은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것이 아님
- 공지 형상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**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** 유사 판단에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안 됨

### ④ 자유실시디자인 법리

-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 또는 그 결합에 따라 **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**에 해당하는 경우
- 확인대상 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**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**

## (4) 특허법원(원심법원) 판단

- 확인대상 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은 대상 물품이 동일·유사함
- 두 디자인 사이에는 원심 판시 차이점 ①~⑥이 존재하나, 원심 판시 공통점 ①~⑥이 존재함
- 공통점 종
  - 일부는 선행디자인 12에,
  - 일부는 선행디자인 1, 5에
  - 개별적으로 유사한 형상·모양이 존재함
- 그러나 '공통점 ①·②·③', '공통점 ②·⑤·⑥'은



공지 부분이 결합하여 **새로운 심미감을 형성하는 경우**로서

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없는 **지배적인 특징**에 해당함

- 반면 차이점들은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
- 따라서 확인대상 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**유사한 디자인**에 해당함
- 또한 통상의 디자이너가  
선행디자인 12에 선행디자인 1, 5를 결합하더라도  
**확인대상 디자인을 쉽게 실시할 수 없으므로**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음
- 결론적으로 확인대상 디자인은  
**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함**

#### (5) 대법원 판단

- 디자인 유사 판단, 공지·기능 형상 평가, 자유실시디자인에 관한 법리를 설시함
- 원심판결 이유 중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,  
확인대상 디자인이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**결론은 정당함**
- 원심에는
  - 법리 오해
  - 심리미진
  -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
  -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
  -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음
- 자유실시디자인 판단도 적법함
- 한편 원고의  
**등록디자인의 창작용이성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**
  -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
  -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된 주장으로**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**

#### (6) 결론

-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**상고를 기각함**
- 확인대상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**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함**

#### (7) 한줄 키워드 요약

- 공지·기능 형상의 결합이라도 지배적 특징과 새로운 심미감이 형성되면 유사로 보며, 자유실시디자인이 아닌 한 권리범위에 속한다

#### (8) 추가 정리 포인트

- 디자인 유사 판단은 공지 여부 → 결합에 의한 심미감 → 지배적 특징의 순서로 검토할 것
- 기능적 형상이라도 대체 가능성 존재 시 중요도 경시 불가
-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**무효사유 주장 자체가 허용되지 않음을 반드시 명시할 것**